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국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56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홍국표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춘선,
유만희, 유정희, 윤종복,
이성배,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춘대,
최민규, 허 훈, 황철규
의원(21명)

1. 제안이유

-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유공자를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의 조례는 국가보훈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해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곤란 및 무연고 유공자 장례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서 유공자를 포함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24년 2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장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음.

- 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곤란 및 무연고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사 예우를 제공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 조례 제3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함.
- 나. 동 조례 제3조 제4항에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받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영장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제4항1)에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 및 장사 예우책무 강조규정을 변경·신설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시장의 책무규정은 통상 선언적 조항(Ex.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제외하나 “~추진하여야 한다”, “~지원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비용추계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